

가설 컨테이너 사무실 내부 화재로 질식



1. 재해발생경위

2005년 12월 ○○일 02:00분경 서울시 소재 ○○주상복합 신축현장에서 피재자가 동료작업자 2명과 함께 현장내 가설컨테이너 사무실 내에서 취침 중 난방용 전기온열기(라디에이터)가 과열되면서 발화하여 연소시 발생되는 유독가스에 질식되어 사망한 재해임.

2. 재해발생요인

- 가. 관리감독 소홀
- 나. 가열방지조치 미흡
- 다. 사무실 내에서 취침

3. 동종재해예방대책

- 가. 사무실내 주기적 환기 실시

가설 컨테이너 사무실 내에서 소모 전력량이 큰 이동식 전열기구를 사용시 과열이 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전원



재해사레연구 질식사고

을 차단하고 환기를 실시함.

나. 이동식 전열기구 사용시 과열방지조치

인화성 높은 물질로 마감되어 있는 벽에서 이격시켜 배치하여 사용하는 등의 과열방지조치 철저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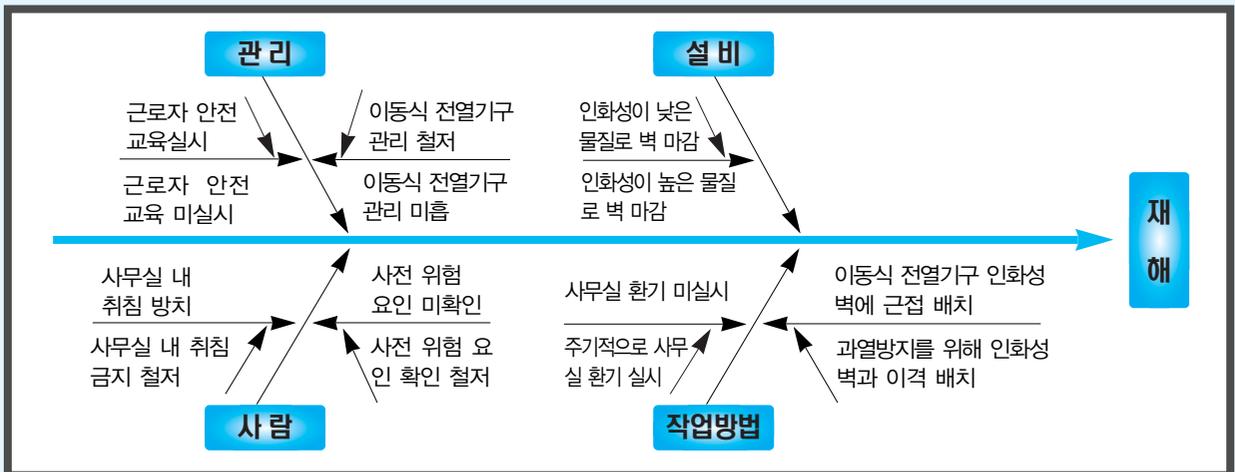
다. 가설 컨테이너 사무실 내에서 취침금지

동절기 난방시설이 취약한 건설현장내 가설 컨테이너 사무실 내에서 취침 금지.

4. 범위반사항

-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
-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5. 재해 요인도



조립식 판넬 운반중 퓨즈에 감전



1. 재해발생경위

2006년 1월 ○일 11:52분경 인천시 소재 ○○어시장 변전실 관리사무실 공사현장에서 관리실(조립식) 설치를 위해 피재자 2명이 조립식 벽체 판넬(일명 샌드위치판넬)을 운반하던 중 판넬 끝단부가 변압기(22,900V)의 퓨즈에 닿으면서 감전되어 1명은 사망하고 1명은 부상을 당한 재해임.

2. 재해발생요인

- 가. 절연용방호구 미설치
- 나. 정전작업요령 미작성
- 다. 전로충전여부 미확인

3. 동종재해예방대책

- 가. 절연용방호구 설치

전기기계·기구의 충전전로에 근접하는 장소에서 시설물의 설치·해체·점검 등의 작업을 행할 경우 방호망,



재해사레연구 감전사고

절연웬스 등의 방책 또는 절연용 방호구를 사전에 설치한 후 작업.

나. 정전작업요령 작성

특별고압의 단로기 등을 폐로(정전)할 경우 정전작업요령을 작성하여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작업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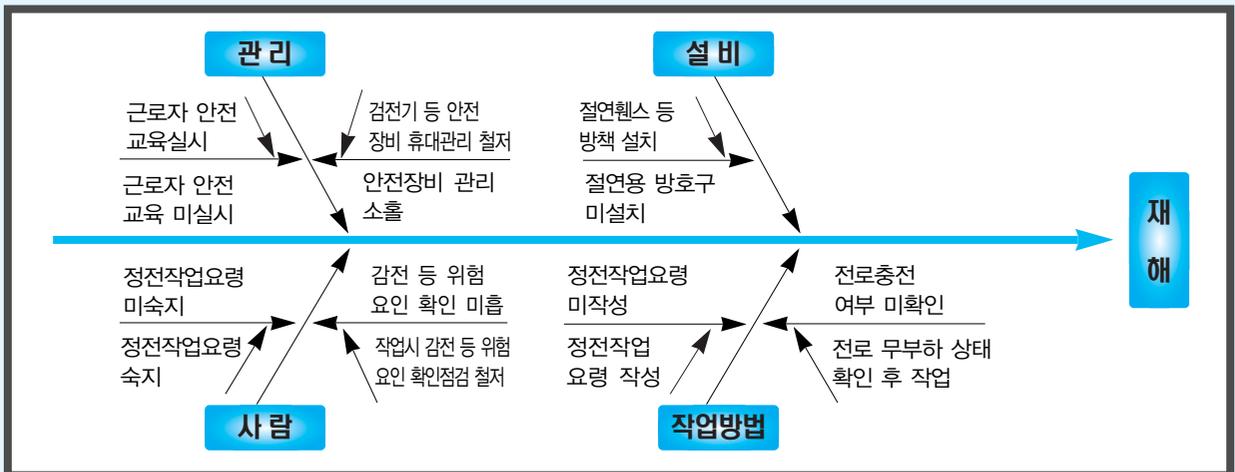
다. 전로 충전여부 확인

정전하에서 충전전로 근접작업을 행할 경우 전로가 무부하 상태임을 확인한 후 작업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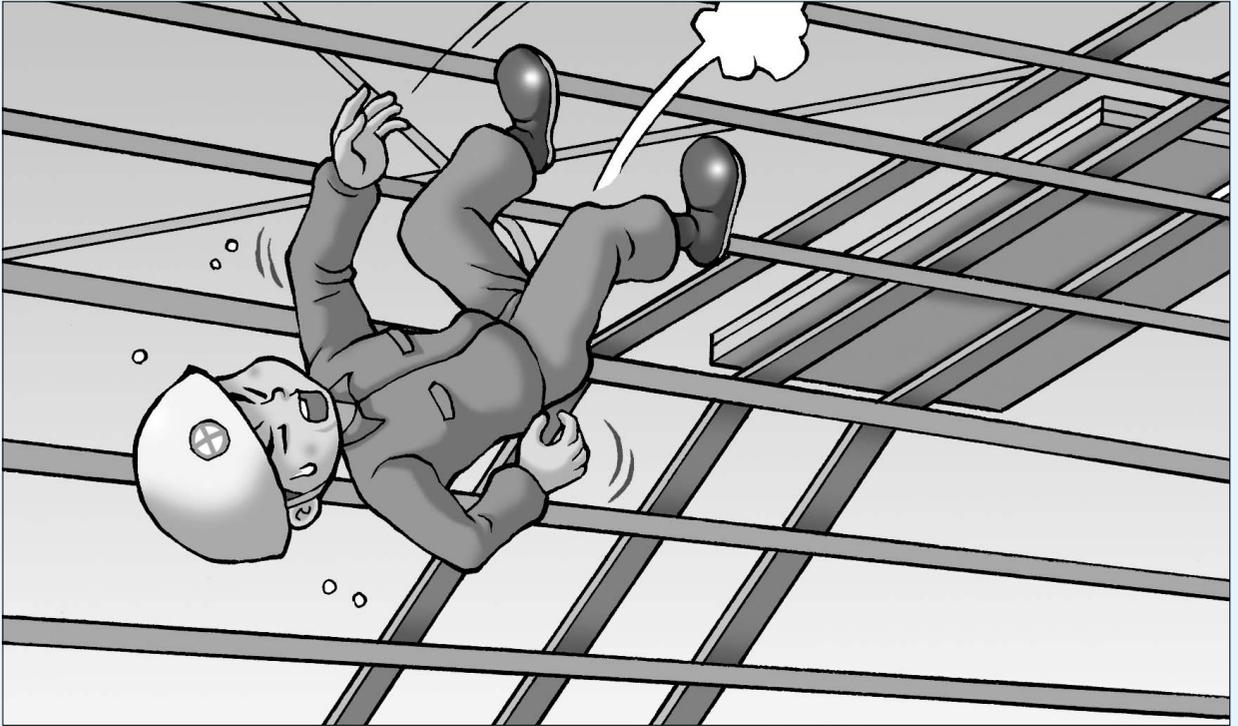
4. 범위반사항

-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
-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 실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5. 재해 요인도



지붕 패널 운반 적재 중 추락



1. 재해발생경위

2006년 1월 ○일 14:30분경 경남 소재 ○○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재자가 동료작업자와 철골 지붕에서 샌드위치패널을 해체하여 인력으로 운반 적재 하던 중 밟고 있던 턴버클이 파단되면서 몸의 중심을 잃고 패널이 설치되지 않은 개구부로 추락하여(7m) 사망한 재해임.

2. 재해발생요인

- 가. 추락방지조치 미실시
- 나. 추락방지망 미설치
- 다. 불안전상태에서 작업

3. 동종재해예방대책

- 가. 추락방지조치 철저

지붕의 철골 및 패널 설치작업시 추락방지조치로 지붕전면에 걸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부착설비에 안



재해사레연구 추락사고

전대를 걸고 작업.

나. 추락 방지망 설치

철골지붕 하부에는 추락재해 발생시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구조의 추락 방지망 설치.

다. 안전성 확보후 작업

발판물에 대한 사전 안전성을 확보한 후 작업.

4. 범위반사항

-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
-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5. 재해 요인도

